

1. 개정이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농업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에 청년농업인 육성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립식량과학원 밀 연구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6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8월 31일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농촌진흥청의 인력 1명(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며, 실용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의 인력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는 한편,

연구·지도·행정·기술 등 직종·직렬 간의 벽을 허물어 융·복합형 인재의 활용 및 조직 구성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 모든 직위(고위공무원단 4직위, 과장급 23직위) 및 소속기관의 일부 직위(과장급 20직위)를 복수직렬로 확대하고 관련 정원 33명(고위공무원 1명, 3·4급 1명, 4급 4명, 4·5급 16명, 6급 6명, 연구관 5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의 각 부서별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국립농업과학원의 잠사양봉소재과 및 곤충산업과를 각각 곤충양잠산업과 및 양봉생태과로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며, 개방형직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유전자공학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고 국립농업과학원의 생물소재

공학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새로 지정하며,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을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을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을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을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으로, “기술서기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을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을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을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

관·환경연구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을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을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을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을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도정책과·기술보급과·농촌자원과·재해대응과 및 식량산업기술팀”을 “지도정책과·기술보급과·농촌자원과·재해대응과·식량산업기술팀 및 청년농업인육성팀”으로,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을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을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청년농업인육성팀장은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농

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농촌지도자회 육성 및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제8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우량품종 및 우량가축”을 “우량품종”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6.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지원

17. 농업인의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지원

제8조제6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제8조제8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6. 축산·조사료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7. 주요 우량 가축의 품종 보급에 관한 사항

제8조제9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⑩ 청년농업인육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및 농업기술창업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2. 4-에이치회 육성

3.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및 지도직공무원 연구회 육성

4.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정보 제공

5. 청년농업인의 농업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제9조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을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을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조정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를 “기획조정과장·운영지원과장 및”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기후변화평가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을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기후변화평가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잠사양봉소재과·곤충산업과”를 “곤충양잠산업과·양봉생태과”로, “잠사양봉소재과장”을 “곤충양잠산업과장”으로, “곤충산업과장”을 “양봉생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잠사양봉소재과장”을 “곤충양잠산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용곤충(벌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탐색·분류·동정 및 정밀진단기술 개발
2. 유용곤충의 생리생태 및 병리에 관한 연구
3. 유용곤충의 유전정보 해석 및 유용물질 생산·이용에 관한 연구
4. 유용곤충 및 뽕나무의 유전자원 보존, 재배·사육기술 및 품종육성 연구
5. 곤충(벌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자원의 대량사육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6. 곤충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7. 유용곤충자원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8. 우수한 원원종(原原種: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 누에의 생산 및 보급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곤충산업과장”을 “양봉생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우수한 원원종(原原種: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 꿀벌의 생산 및 보급
2. 꿀벌 유전자원 보존 및 품종육성에 관한 연구
3. 꿀벌의 사육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4. 꿀벌의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 연구

5. 화분매개벌류의 보존 및 농업 이용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6. 화분매개벌류의 생태적 가치에 관한 연구
7. 양봉산물 등 꿀벌자원의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연구
8. 양봉산업 현황 등의 실태조사

제14조제2항 중 “유해생물팀”을 “유해생물과”로,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을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유해생물팀장은 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을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유해생물과장은 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생물팀장”을 “유해생물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에너지환경공학과장 및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재해예방공학과장은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를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에너지환경공학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재해예방공학과장은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연구관으로”를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유전체과장·생물소재공학과장 및 생물안전성과장”을 “유전체과장 및 생물소재공학과장”으로, “유전자공학과장”을 “생물안전성과장은 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유전자공학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작물육종과장·작물재배생리과장·작물기초기반과장·간척지농업연구팀장”을 “작물육종과장·작물재배생리과장·작물기초기반과장”으로, “농업연구관으로”를 “농업연구관으로, 간척지농업연구팀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을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각 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를 “밭작물개발과장 및 논이용작물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생산기술개발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서기관·농업연구관”을 “농업연구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서기관·공업연구관”을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을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을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유전자공학과장”을 “생물소재공학과장”으로 한다.

별표 2 일반직 계 343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을 신설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를 삭제하며,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5 다음에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를 신설하고,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를 삭제하며, 서기관 ·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농촌지도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 다음에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6”를 신설하고,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6”를 삭제한다.

별표 3 일반직 계 346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을 신설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를 삭제하며,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5 다음에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를 신설하고, “서기관 · 기술서기

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를 삭제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농촌지도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6”를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6”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을 “2”로 하고,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75”를 “74”로 한다.

별표 4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를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를 삭제하며, 운전서기보 8 다음에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5”를 신설하고,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5”를 삭제한다.

별표 5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를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를 삭제하며, 운전서기보 8 다음에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5”를 신설하고,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5”를 삭제한다.

별표 6 중 공업서기보 “1”을 “2”로 하고, 운전서기보 “12”를 “11”로 한다.
별표 7 중 공업서기보 “1”을 “2”로 하고, 운전서기보 “12”를 “11”로 한다.
별표 7의2 일반직 계 26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
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을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다음에 “행
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6”를
신설하며,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
관 1”를 삭제하고,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
도관 6”를 삭제한다.

별표 7의3 일반직 계 26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
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을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다음에 “행
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6”를
신설하며,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
관 1”를 삭제하고,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
도관 6”를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1년 8월 31일”을 “2023년 8월 31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1년 8월 31일”을 “2023년 8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제8조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청년농업인육성팀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청년농업인육성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청년농업인육성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지도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u> 또는 <u>농촌지도관</u> 으로 보한다.	제3조(대변인) -----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u> -----.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u>일반직공무원 · 농업연구관</u> 또는 <u>농촌지도관</u> 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 <u>일반직공무원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u>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부무담당관 · 지식정보화담당관 · 고객지원담당관 및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부무담당관 · 지식정보화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은 <u>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u> 또는 <u>농촌지도관</u> 으로,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장은 <u>기술서기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u> 또는 <u>농업연구관</u> 으로 보한다.	② ----- ----- ----- ----- ----- ----- ----- <u>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u> -----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u>

③ ~ ⑧ (생략)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u>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u> 또는 <u>농촌지도관</u>으로 보한다.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u> 또는 <u>농촌지도관</u>으로 보한다. 제7조(연구정책국) ① 연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u>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u> 또는 <u>농촌지도관</u>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연구정책국에 연구정책과·연구운영과·연구성과관리과·농자재산업과·사업기획팀 및 첨단농자재육성팀을 두되, 각 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u>	<u>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u> 또는 <u>농촌지도관</u>---.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담당관) ----- <u>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u> ----. 제6조(운영지원과) ----- -- <u>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u> ----. 제7조(연구정책국) ① ----- ----- 일 <u>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u> ----- ----- -----. ② ----- ----- ----- ----- ---- <u>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u>
--	--

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사업기획
팀장 및 첨단농자재육성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 농업사무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 ⑨ (생 략)

제8조(농촌지원국) ① 농촌지원국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
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
다.

② 농촌지원국에 지도정책과 ·
기술보급과 · 농촌자원과 · 재해
대응과 및 식량산업기술팀을 두
되, 지도정책과장 · 기술보급과
장 · 농촌자원과장 및 재해대응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
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
촌지도관으로, 식량산업기술팀
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
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농업연
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

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
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
관 ---.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농촌지원국) ① -----
----- 일
반직공무원 · 공업연구관 · 농업
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
관 · 환경연구관 -----
--.

② ----- 지도정책과 ·
기술보급과 · 농촌자원과 · 재해
대응과 · 식량산업기술팀 및 청
년농업인육성팀-----

----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
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
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

다.

③ 지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8. 농촌지도자회, 4-에이치회 등
학습조직 육성 지원

9. 삭 제

10.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
성

11.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지원

12. (생 략)

④ 삭 제

⑤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조사료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2. (생 략)

3. 주요농작물 우량품종 및 우

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
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청년농업인육성팀장은 행정사
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
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
구관 ---.

③ -----
-----.

1. ~ 7. (현행과 같음)

8. 농촌지도자회 육성 및 농업
인 학습단체 지원

<삭 제>

<삭 제>

12. (현행과 같음)

⑤ -----
-----.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 우량품종-----

<u>량가축의 보급에 관한 사항</u> 4. ~ 7. (생 략) 8. 삭 제 <u>9.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보급</u> <u>및 지원</u> 10. 삭 제 11. ~ 15. (생 략) <u><신 설></u> <u><신 설></u> ⑥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u><신 설></u> ⑦ 삭 제 ⑧ 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u>3.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u> <u>지원에 관한 사항</u> 4. (생 략) <u>5. 농업인의 현장애로 사항에</u> <u>대한 기술개발사업 지원</u> <u><신 설></u>	----- 4. ~ 7. (현행과 같음) <u><삭 제></u> 11. ~ 15. (현행과 같음) <u>16.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u> <u>지원</u> <u>17. 농업인의 현장애로 사항에</u> <u>대한 기술개발사업 지원</u> ⑥ ----- -----. 1. ~ 12. (현행과 같음) <u>13.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보급</u> <u>및 지원</u> ⑧ ----- -----. 1. ·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u>6. 축산·조사료에 관한 기술의</u>
---	---

<신 설>

⑨ 식량산업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제9조(기술협력국) ① 기술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

보급 및 지원

7. 주요 우량 가축의 품종 보급에 관한 사항

⑨ -----
-----.

1. ~ 3. (현행과 같음)

4.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⑩ 청년농업인육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및 농업기술창업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2. 4-에이치회 육성

3.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및 지도직공무원 연구회 육성

4.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정보 제공

5. 청년농업인의 농업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제9조(기술협력국) ① -----
----- 일
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농업
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
관·환경연구관 -----

② 기술협력국에 국제기술협력
과 · 국외농업기술과 · 농산업경
영과 및 수출농업지원과를 두
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
관 ·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기획조정과·운영지원과·기술지원과 및 환경개선미생물연구단을 두되, 기획조정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환경개선미생물연구단장은 농업연구관·보건의료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농업환경부에 토양비료과 .

② -----

-----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
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
구관 · 환경연구관 -----.

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① -----

----- 기획
조정과장 · 운영지원과장 및 --

-----.

② _____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생산 및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2. 누에, 꿀벌의 유전정보 해석 및 유용물질 생산·이용에 관한 연구

3. 누에, 꿀벌의 유전자원 보존, 재배사육기술 및 품종육성 연구

4. 우량 원원잠종의 생산 및 보급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곤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용곤충의 탐색·분류·동정 및 정밀진단기술 개발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탐색·분류·동정 및 정밀진단기술 개발

2. 유용곤충의 생리생태 및 병리에 관한 연구

3. 유용곤충의 유전정보 해석 및 유용물질 생산·이용에 관한 연구

4. 유용곤충 및 뽕나무의 유전자원 보존, 사육·재배기술 및 품종육성 연구

5. 곤충(벌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자원의 대량사육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6. 곤충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7. 유용곤충자원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8. 우수한 원원종(原原種: 종자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 누에의 생산 및 보급

⑤ 양봉생태과장-----
-----.

1. 우수한 원원종(原原種: 종자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 꿀

<u>2. 유용곤충의 생리생태 및 병리에 관한 연구</u> <신 설> <신 설> <신 설> <u>6. 곤충자원의 대량사육체계 확립 및 화분매개 이용에 관한 연구</u> <u>7. 곤충(누에, 꿀벌 및 양잠·양봉산물은 제외한다)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u> <u>8. 유용곤충자원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u> ⑥ (생 략) 제14조(농산물안전성부) ① (생 략) ② 농산물안전성부에 잔류화학평가과·작물보호과·독성위해평가과 및 유해생물팀을 두되, 잔류화학평가과장은 <u>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u>	<u>벌의 생산 및 보급</u> <u>2. 꿀벌 유전자원 보존 및 품종육성에 관한 연구</u> <u>3. 꿀벌의 사육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u> <u>4. 꿀벌의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 연구</u> <u>5. 화분매개벌류의 보존 및 농업 이용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u> <u>6. 화분매개벌류의 생태적 가치에 관한 연구</u> <u>7. 양봉산물 등 꿀벌자원의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연구</u> <u>8. 양봉산업 현황 등의 실태조사</u>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농산물안전성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유해생물과</u> ----- ----- <u>기술서기관</u> <u>·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u>
--	---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작물보호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독성위해평가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유해생물팀장은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 략)

⑦ 유해생물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제15조(농업공학부) ① (생 략)

② 농업공학부에 스마트팜개발과 · 에너지환경공학과 · 수확후관리공학과 · 재해예방공학과 · 밭농업기계화연구팀 및 농업인안전보건팀을 두되, 스마트팜개발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에너지환경공학과장 및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재해예방공학과장은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밭농업기

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유해생물과장은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유해생물과장-----

1. ~ 6. (현행과 같음)

제15조(농업공학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에너지환경공학과장은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재

계화연구팀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⑧ (생략)

제16조(농업생명자원부) ① (생략)

② 농업생명자원부에 유전체과 · 생물소재공학과 · 유전자공학과 및 생물안전성과를 두되, 유전체과장 · 생물소재공학과장 및 생물안전성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유전자공학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제20조(국립식량과학원) ① 국립식량과학원에 기획조정과 · 운영지원과 · 작물육종과 · 작물재배생리과 · 작물기초기반과 · 기술지원과 · 간척지농업연구팀

해예방공학과장은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농업생명자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유전체과장 및 생물소재공학과장 ----- 생물안전성과장은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유전자공학과장-----.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국립식량과학원) ① -----

및 밀연구팀을 두되, 기획조정
과장·운영지원과장 및 기술지
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작물육종과장
·작물재배생리과장·작물기초
기반과장·간척지농업연구팀장
및 밀연구팀장은 농업연구관으
로 보한다.

② ~ ⑨ (생 략)

제21조(중부작물부) ① (생 략)

② 중부작물부에 중부작물과·
수확후이용과 및 재배환경과를
두되, 중부작물과장 및 수확후
이용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재
배환경과장은 기술서기관·농
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 략)

제22조(남부작물부) ① (생 략)

② 남부작물부에 밭작물개발과

----- 작물육종과장
·작물재배생리과장·작물기초
기반과장 -----
----- 농업연구관으
로, 간척지농업연구팀장은 농업
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
---.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1조(중부작물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기관·기술서기
관·농업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남부작물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논이용작물과 및 생산기술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 략)

제23조(고령지농업연구소) ①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생 략)

제24조(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①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장은 서기관 ·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생 략)

제25조의2(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교육훈련지원과 및 역량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농업연구관 또는

----- 밭작물개발과장 및 논이용작물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생산기술개발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고령지농업연구소) ① ----- 농업연구관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①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① -----
--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② -----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농업연구관 · 수의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④ (생 략) 제3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장・유전자공학과장, 국립식량과학원 재배환경과장 및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밀연구팀은 <u>2021년 8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 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3호 농촌진	연구관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생물소재공학과장</u>-----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 <u>2023년 8월 31일</u>-----. ②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 -----
---	---

신 · 구정원대비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u> <u>일반직 · 공업연구관 · 농업</u> <u>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u> <u>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u> <u>농촌지도관</u>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u> <u>일반직 · 공업연구관 · 농업</u> <u>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u> <u>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u> · ·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u> <u>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u> <u>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u> <u>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u>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u> <u>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u> <u>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u> <u>촌지도관</u>	· · <u><신 설></u> <u>1</u> · · <u><신 설></u> <u>2</u> <u>2</u>	· · <u>1</u> <u><삭 제></u> · · <u>2</u> <u><삭 제></u>	+1 -1 +2 -2

·	·	·	
·	·	·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농업사무관 · 공업 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 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 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u>	<u><신 설></u>	<u>16</u>	+16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농업사무관 · 농업 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u>	<u>16</u>	<u><삭 제></u>	-16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 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 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 도관</u>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 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 관 또는 농촌지도관</u> · ·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 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 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 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u>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 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 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 촌지도관</u>	· · <신 설> <u>1</u> · · <신 설> <u>2</u>	· · <u>1</u> <삭 제> · · <u>2</u> <삭 제>	+1 -1 +2 -2

·	·	·	
·	·	·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농업사무관 · 공업 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 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 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u>	<u><신 설></u>	<u>16</u>	+16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농업사무관 · 농업 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u>	<u>16</u>	<u><삭 제></u>	-16
·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농업연구 관 또는 농촌지도관	<u>1</u>	<u>2</u>	+1
·	·	·	
·	·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u>75</u>	<u>74</u>	-1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 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u>	<u><신 설></u>	<u>2</u>	+2
<u>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 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 경연구관</u>	<u>2</u>	<u><삭 제></u>	-2
·	·	·	
·	·	·	
<u>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 는 시설연구관</u>	<u><신 설></u>	<u>5</u>	+5
<u>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u>	<u>5</u>	<u><삭 제></u>	-5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 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u>	<u><신 설></u>	<u>2</u>	+2
<u>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 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 경연구관</u>	<u>2</u>	<u><삭 제></u>	-2
·	·	·	
·	·	·	
<u>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 는 시설연구관</u>	<u><신 설></u>	<u>5</u>	+5
<u>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u>	<u>5</u>	<u><삭 제></u>	-5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보			<u>1</u>		<u>2</u>	+1	
운전서기보			<u>12</u>		<u>11</u>	-1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보				<u>1</u>	<u>2</u>	+1	
운전서기보				<u>12</u>	<u>11</u>	-1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 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 구관 또는 농촌지도관</u>	· · <u><신 설></u>	· · <u>1</u>	+1
<u>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 는 농촌지도관</u>	<u><신 설></u>	<u>6</u>	+6
<u>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 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 지도관</u>	<u>1</u>	<u><삭 제></u>	-1
<u>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u>	<u>6</u>	<u><삭 제></u>	-6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3]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 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 구관 또는 농촌지도관</u>	· · <u><신 설></u>	· · <u>1</u>	+1
<u>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 는 농촌지도관</u>	<u><신 설></u>	<u>6</u>	+6
<u>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 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 지도관</u>	<u>1</u>	<u><삭 제></u>	-1
<u>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u>	<u>6</u>	<u><삭 제></u>	-6
· ·	· ·	· ·	